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2. 9. 23(금)

| 순서 | 검 토 안 건 | 제 안 |
|----|--|-----|
| 1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한 조례안 | 구청장 |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구청장
- 제안일 : 2022. 9. 5.
- 회부일 : 2022. 9. 13. (의안번호 : 22-88)

2. 제안이유

- 지역 내 다양한 민원과 갈등을 주민과의 협의를 통하여 원활히 해결하고 주민 간 합의를 통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민관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동별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 제4조)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제12조)
 - 위원회 구성, 위원장 직무,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제9조)

-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사항 규정
(안 제10조 ~ 제11조)
- 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 특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3조 ~ 제15조)
 - 특별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안 제13조 ~ 제14조)
 - 협의회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안 제15조)
- 수당지급 등에 관한 규정(안 제16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제79조
(자문기관의 구성)

5.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지역 내 다양한 민원과 갈등을 주민과의 협의를 통하여 원활히 해결하고 주민 간 합의를 통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민관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 (안 제1조 ~ 제2조)에는 동별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목적 및 정의, ▲ (안 제3조 ~ 제4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안 제5조 ~ 제9조)에는 위원회 구성, 위원장 직무,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안 제10조 ~ 제11조)에는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사항 규정, ▲ (안 제12조)에는 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 ▲ (안 제13조 ~ 제14조)에는 특별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 ▲ (안 제15조)에는 협의회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 ▲ (안 제16조)에는 수당지급 등에 관한 규정하는 내용임.

○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동 중심의 민원 해결 기구로 동장이 추천하는 등 일반 주민들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30인 이상이 동일 또는 유사하게 요구하는 민원을 중심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따라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고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으로 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5조 위원회 구성은 15명 위원들은 본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민원 중재의 합리적 해결방안 제안시 수용이 가능한 만큼 위원선정을 신중히 하여야 할 것이며,

○ 기초 자치단체 내 동별 민원 해결기구 조례 제정 건은 없으며, 광역·기초 자치단체 규모에서 운영하는 민원 해결기구는 있으나, 동 단위의 소규모 기구는 자치구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임으로 제안에서 해결 전 과정을 합리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임.

- 또한, 마포구 광역쓰레기 소각장 신설지정에 따른 서울시의 마포구 의견 수렴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정책결정을 일방통행함에 따라 마포구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점, 성미산 산림환경 개선사업이 주변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문제점 제시로 사업이 진행되는 못 하고 있는 점, 재건축, 재개발, 모아주택정책에 따른 찬반 등 동별 이해관계의 갈등으로 참여하게 대립되고 있는 점 등은 본 조례안 제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나 기존 유사한 기구 중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기구의 특성에 맞는 조례의 기능 제 설정과 조례의 통폐합, 불필요한 조례의 폐기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유사사례 검토

- 기구 명: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 조례, 매뉴얼
 -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직접 주민을 방문해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
- 기구 특성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2022년 서울시 전면 시행) → 골목길 반상회로 발전
 - * ‘골목회의’,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차공간, 쓰레기 문제, 가로등 설치 등 골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주민들이 온라인으로 골목회의 개최 요청 → 해당 안건은 주민자치회에 의제로 올라가 논의 → 의제로 정식 채택되는 경우에는 예산 할당

[별표 1]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 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